# 학교운영위원회 규정

제1조(목적) 본 규정은 근명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명칭 및 설치) 본 위원회는 근명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(이하 '운영위원회'라 한다)라 칭하고 근명중학교에 설치한다.

# 제3조(위원 정수 및 구성):

- 1. 운영위원회 위원 정수는 9인이상 12인 이내로 하고, 학부모위원 40%~50%, 교원위원 30%~40%, 지역위원 10%~30%로 구성 한다.
- 2. 학교장은 교원위원 중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.

# 제4조(위원의 자격)

- 1. 학부모 및 지역 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.
- 2. 교원위원은 본교 교원이어야 한다.
- 3.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.

#### 제5조(위원의 선출시기)

- 1. 학부모 및 교원 위원 선출은 임기 만료일 10일 이전에 선출한다.
- 2. 지역위원은 임기 만료일 전일까지 선출한다.

#### 제6조(위원의 선출방법)

- 1. 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무기명투표로 직접 선출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여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, 우편투표,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방법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.
- 2.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배수로 추천한 자 중 학교장이 위촉한다.
- 3. 지역위원은 학부모 및 교원 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, 교원 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 한다.
- 4.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보궐 선출한다. 단,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서 위원 정수의 1/4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한 때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보궐 선출을 하지 않을 수 있다.
- 5. 제1항, 제2항의 운영위원을 선출하기 위하여 "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"와 "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" 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
#### 제7조(임원의 임기)

- 1.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
- 2. 위원의 임기 개시 일은 매년 4월 1일로 한다.
- 3. 보궐선거에 의해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.

# 제8조 (위원회 조직 및 선출 방법)

- 1. 본 위원회는 위원장, 부위원장 각 1명을 둔다.
- 2.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교원 위원이 아닌 자 중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 위원 2/3이상 득표로 당선된다.
- 3. 제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.
- 4.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,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.
- 5.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.
- 6.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결원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,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.
- 7.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회의를 소집, 집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.

# 제9조 (위원의 자격 상실)

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.

- 1. 교원 위원이 소속을 달리한 때.
- 2. 학부모 위원은 자녀 학생이 졸업, 휴학, 전학 및 퇴학한 때,
- 3. 회의 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 연락 없이 3회 연속하여 회의에 불참한 때,
- 4. 위원이 제4조의 규정에 위배된 사실이 발견된 때.
- 5. 학부모 위원이 제출한 신상 자료에 허위 사실이 발견된 때.
- 6. 기타 위원회에서 자격 상실을 만장일치로 의결한 경우.

## 제10조 (위원의 임무)

- 1. 모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수당 등의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
- 2. 위원은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,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.
- 3. 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 목적의 거래를 할 수 없으며,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, 이익을 취득 또는 알선할 수 없다.
- 4. 학부모 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수익자부담경비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없다.
- 5. 위원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 심의에 참여할 수 없고, 당해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척된다.

## 제11조 (기능)

- 가.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. 단, 제1호에 대하여는 자문한다.
- 1. 학교 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
- 2.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
- 3.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
- 4. 교과용 도서 및 교육 자료의 선정
- 5. 교복-체육복-졸업앨범 등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
- 6. 정규 학습 기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
- 7.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·운용 및 사용
- 8. 학교급식
- 9. 학교 운동부의 구성·운영
- 10. 학교운영에 관한 제안 및 건의 사항
- 11. 그 밖에 대통령령이나 시 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

- 12. 학생 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
- 13. 현장 체험 학습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. 다만 특정 동아리 등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.
  - 14. 그 밖에 학교운영에 관해 위원들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
- 나. 「초중등교육법 시행령」제57조의 2(학생의 안전대책 등)에 따라 법 제30조의8제1항 및 제2항에 따른학생의 안전대책 등을 수립할 때 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친다.
- 다. 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·운영 및 사용에 관하여 심의·의결한다.
- 라. 운영위원회는 학교법인의 요청으로「개방임원추천위원회」구성을 위해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 중에서 추천위원회 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.

#### 제12조 (회의 소집)

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.

- 1. 정기회는 회기 개시와 회기 말 15일 이내에 소집한다. 단, 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회는 학교장이 위원 임기 개시 15일 이내에 소집한다.
- 2. 임시회는 학교장 또는 재적 위원 1/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회의 개최 7일 전에 소집 공고 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. 단,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.
- 3. 운영위원회의 연간 회의 일수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.

## 제13조 (안건의 제출 및 발의)

운영 위원회의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또는 재적 위원 1/4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.

제14조 (의사 정족수)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,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.

#### 제15조 (회의 공개)

- 1. 회의는 공개한다. 다만,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회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- 2. 회의 개최 시는 가정통신문, 학교게시판 등을 통하여 개최일자와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및 교사 등이 회의를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- 3. 안건을 자문할 때 학교장은 관련 교직원을 운영위원회에 참석시켜 안건에 대해 설명하고 답변하도록 할 수 있다.
- 4.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관련 전문인을 초청하여 그 의견을 참고할 수 있다.

#### 제16조 (회의록 작성)

- 1.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 진행 내용 및 결과와 출석 위원 성명을 기재 후 학교장과 위원 장이 서명한다.
- 2. 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홈페이지에 게시하여 학부모, 교원 및 지역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게 한다. 다만, 비공개 결정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.
- 3.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 말에 활동 사항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, 교원 및 관할 교육청 등에 배포하고 차기 정기회의 시 보고해야 한다.

#### 제17조 (소위원회 설치)

- 1. 운영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. 다만, 학교급식소위원회 와 예·결산소위원회는 반드시 구성하여야 한다.
- 2. 소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통해 9명 이내로 구성하되, 학부모위원은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. 단, 급식소위원회는 공동조리교인 고등학교 급식소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.
- 3. 소위원회에 필요한 경우 학부모, 학생, 외부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.

제18조 (운영 경비) 운영위원회의 연수경비, 회의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운영비에서 충당한다.

제19조 (학교 내의 자생 조직)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 내외의 자생 조직은 운영위원회의 산하 단체로 둘 수 있다. 단, 그 대표자는 운영위원회의 사전 허가를 얻어 조직과 운영계획 등을 회의에 출석 발언할 수 있다.

**제20조 (사무 처리)** 운영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둔다. 간사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.

#### 제21조 (학교발전기금의 모금 및 관리)

- 1. 학교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조성한다.
- ① 기부자가 기부한 금품의 접수
- ② 학교 내. 외의 조직. 단체 등이 그 구성원으로부터 자발적으로 각출하거나 구성원외의 자로부터 모금한 금품의 접수
- 2. 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사용한다.
- ①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
- ② 교육용기자재 및 도서 구입
- ③ 학교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
- ④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
- 3. 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에 관한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.
- 4. 학교발전기금의 운용 결과는 공개 하여야 한다.

## 제22조 (운영세칙)

- 1. 운영위원회의 규정에 대한 개정은 운영위원회 위원의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정한다.
- 2. 본 규정에 명시된 건 이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.

# 부 칙

# 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 제2조 (최초 구성되는 위원회 임기)

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최초로 구성되는 위원회 회원의 임기는 익년도 3월 31일까지로 한다.

# 제3조 (최초의 규정)

최초의 규정은 교직원 전체 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제정한다.

# 제4조 (규정의 개정)

- 1. 이 규정은 2006년 3월 1일 개정 시행한다.
- 2. 이 규정은 2016년 7월 19일 개정 시행한다.
- 3. 이 규정은 2020년 3월 27일 개정 시행한다.
- 4. 이 규정은 2022년 4월 8일 개정 시행한다.